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 I. 주요내용

-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의5 신설).

#### II. 검토의견

개정안 제55조의5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sup>1)</sup>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근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가 동일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파견근무가 필요한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sup>2)</sup>에 따른 학교라고 설

---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명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3)에 따른 학교도 교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음.

또한, 개정안 제55조의5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임용권자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 제53조의24)에서 임용권자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교원의 임용5) 사항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을 규정하면서 파견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6) 및 교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 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

의 파견근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sup>7)</sup>에도 파견 권한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음.

| 개 정 안                                                                                                     | 수정의견  |
|-----------------------------------------------------------------------------------------------------------|-------|
| 제55조의5(파견근무)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삭 제>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 Ⅲ. 관계기관의 의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 파견근무의 경우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정원 감소 및 정원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임.

(전문위원 이 화 실)

른 별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7)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다른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연구원,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 연수·연구 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한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파견되는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파견 절차 및 파견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